

업무협약서

십대여성인권센터(이하 '센터'라 한다)는 '성매매피해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지원'(이하 '의료지원'이라 한다)을 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사회(이하 '서울시의사회'라 한다)와 2015년 10월 16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협약(이하 '본 협약'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- 다 음 -

1. 목적

본 협약은 센터가 의료지원을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의료전문가로서의 의료적 자문 및 관련병원 연계를 서울시의사회가 지원함으로써 의료지원이 보다 원활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센터의 업무

- (1) 센터는 의료지원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의료지원과 의료적 자문을 서울시의사회에게 요청한다.
- (2) 센터는 의료지원 진행과 관련하여 병원연계가 필요할 시 서울시의사회에 요청한다.
- (3) 센터는 병원연계가 이루어진 곳과 협력단체를 맺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사회에 요청한다.

3. 서울시의사회의 업무

- (1) 서울시의사회는 센터로부터 요청받은 의료적 자문에 대한 의료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필요한 적극적인 의료지원을 한다.
- (2) 서울시의사회는 센터의 요청에 따라 적합한 의료지원이 가능한 병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, 노력한다.
- (3) 서울시의사회는 센터의 요청에 따라 센터와 병원 간 협력단체를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.

4. 의료비

본 협약기간에 발생한 의료비는 센터에서 실비로 지급한다.

5. 협약기간

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의료지원의 진행기간으로 한다.

6. 비밀유지

양 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본 협약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.

이상을 증명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본 협약서 첫머리 기재일자에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.

2015년 10월 16일

서울특별시의회사회

회장 김숙희



십대여성인권센터

대표 조진경

